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권역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14. 8.

**국 토 교 통 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I.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9(2014.5.23)호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기준은 II항 및 III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점수(총점)를 해당 용역업자에 통보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건설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관리 능력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이하“PQ”라 한다)평가시에는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토록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사무소의 평가위원회(3인 이상)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평가서에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6.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PQ평가결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76호, 2013.5.2.)」 제5조에 따라 기준 점수 이상인 용역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0억이상 30억미만 용역의 수행능력평가(PQ) 기준점수는 85.71임

8. PQ평가에서 이미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9.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참여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해당 참여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2.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참여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 가. PQ 참여기술자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총 3개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현재 포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2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중인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기 현장의 중복배치는 예외로 한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우리사무소, 조달청)로 같음 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같음한다.

1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의 각 도급사별 인원수는 도급 지분율에 따르되, 백분율의 $\pm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014-299호(2014. 5.23)에 따른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 가.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책임건설관리기술자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기술지원기술자(도로 및 공항 분야, 토질 및 기초 분야, 토목구조 분야)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
- 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 취득 시기, 자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마. 평가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해당분야 경력 평가

- (1) 상주건설관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 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의 기재가 불분명 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사항은 불인정하며, 대상 경력 및 인정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경 령 종 류	인정율
○ 국토교통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 (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도로 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CM), 시공,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국토교통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舊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포함), 한국수자원공사 / 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설계, 기술자문 경력 ○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공기업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건설관리, 건설사업관리(CM), 시공,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80%

경 력 종 류	인정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기관 이외의 국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3개 공사 이외) 에서 시행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시공 및 설계, 기술자문 경력 ○ 철도(고속, 일반, 도시), 공항(활주로, 유도로) 건설공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건설사업관리,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경력 ○ 도로건설분야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기술자, 기술자문 경력 ○ 도로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분야 경력(단,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단,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유지관리 	60%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발주청” 이외의 민간건설업체 또는 민간인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도로분야 시공·건설사업관리·감독관련·계획·유지관리·기술자문·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인정한다.

단,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도로 분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인 경우 토목분야

※ 단,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수행 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 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 모두를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사. 직무분야 실적 평가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의 “직무분야” 중 토목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와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기술자문 관련 업무 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책임, 시공, 검측)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 감독, 공사관리

자. 참여기술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차. 교육훈련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한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시공단계 참여기술자(책임, 분야별)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적 처리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교육훈련: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다) 기술지원기술자

- 교육훈련: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기술자격은 해당분야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 1주 : 일 7시간교육 ×5일(35시간)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 1)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면접 일정 등은 별도로 우리 청 및 우리 소 홈페이지(또는 공문 시행)에 게시하며, 평가 당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불참할 경우 면접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면접 평가는 업무관리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평가하며,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 청렴도 등을 세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Ⅲ.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배점표]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출 평가한다.

※ 면접평가는 우리소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평가 후 별도기준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의 인정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지방청 및 국토관리 사무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 발주한 단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중 건설사업관리 부분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산정)으로 2억원 이상의 용역을 180일 이상 수행한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및 정부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한 철도(일반, 고속, 도시), 공항(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 실적의 60%를 인정한다.

나.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 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미만 0.4점)

(2) 참여기술자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부실별점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별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2)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별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참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 별표10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별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2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점, 20점 이상 : 5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5) 참여 업체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 1)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과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자의 교체건수를 건설기술자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자수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 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 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 (2) 퇴직한 경우
-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가점 및 감점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가·감점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건설사업관리),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해당 공기업, 광역시·도에 한 함)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서식13-1]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단, 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자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관리기술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를 감점한다.(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감점 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라. 부패행위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 검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배점표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용역개요 해당공사규모 : 100억이상 300억 미만 적용
 해당용역규모 : 20억 미만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60 [23] 2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해당공사 규모</td> <td colspan="5">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td> </tr>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d>300억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4.5이상</td> <td>-</td> </tr> <tr> <td>점수</td> <td>13</td> <td>12</td> <td>11</td> <td>10</td> <td>9</td> </tr> </table>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5이상	-	점수	13	12	11	10	9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5이상	-																																		
점수	13	12	11	10	9																																		
(나) 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6점) (단위 : 년)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 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특급</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고급</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2)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3점)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특급</td> <td>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고급</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1.8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1.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24]	○ 토목분야																																
	(가) 해당분야 경력	14	○ 평가는 분야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평가대상 인원으로 나누어 평가																																
			<table border="1"> <tr> <td>해당공사 규모</td> <td colspan="5">설계,시공 관리,건설사업 관리,유지 관리,감독,기술자문경력 (단위 : 월)</td> </tr> <tr> <td>300억원 이상</td> <td>48이상</td> <td>48미만 42이상</td> <td>42미만 36이상</td> <td>36미만 30이상</td> <td>30미만</td>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36이상</td> <td>36미만 28이상</td> <td>28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td> </tr> <tr> <td>100억원 미만</td> <td>24이상</td> <td>24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2이상</td> <td>-</td> <td>-</td> </tr> <tr> <td>점 수</td> <td>14</td> <td>13</td> <td>12</td> <td>11</td> <td>10</td> </tr> </table>	해당공사 규모	설계,시공 관리,건설사업 관리,유지 관리,감독,기술자문경력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8이상	-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	-	점 수	14	13	12	11	10		
	해당공사 규모	설계,시공 관리,건설사업 관리,유지 관리,감독,기술자문경력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8이상	-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	-																													
	점 수	14	13	12	11	10																													
	(나) 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6점) (단위 : 년)																																
			<table border="1"> <tr> <td>특 급</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고 급</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td> </tr> <tr> <td>중 급</td> <td>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6	5.4	4.8	4.2	3.6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3점) (단위 : 년)																																	
		<table border="1"> <tr> <td rowspan="2">특 급</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r> <td rowspan="2">고 급</td> <td>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 colspan="2">2미만</td> </tr> <tr> <td>3</td> <td>2.7</td> <td>2.4</td> <td colspan="2">2.1</td> </tr> <tr> <td rowspan="2">중 급</td> <td colspan="2">3이상</td> <td colspan="3">3미만</td> </tr> <tr> <td colspan="2">3</td> <td colspan="3">2.7</td> </tr> </table>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	2.7	2.4	2.1	1.8	고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	2.7	2.4	2.1		중 급	3이상		3미만			3		2.7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	2.7	2.4	2.1	1.8																														
고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	2.7	2.4	2.1																															
중 급	3이상		3미만																																
	3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 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기술지원 기술자	(가) 등급	[10]	○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분야 3인 평가																																		
		3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2">등 급(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 <td>특급</td> <td>고급 이하</td> </tr> <tr> <td>3</td> <td>2</td> </tr>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 <td>고급 이상</td> <td>중급</td> </tr> <tr> <td>3</td> <td>2</td> </tr> </tbody> </table>	해당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3	2																					
		해당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3	2																																			
6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연구업무, 강의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4.5이상</td> <td>-</td> </tr> <tr> <td>점 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연구업무, 강의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5이상	-	점 수	6	5.4	4.8	4.2	3.6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연구업무, 강의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5이상	-																																
점 수	6	5.4	4.8	4.2	3.6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1	<p>○ 기술지원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p>※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p>																																		
(4) 면접(발표)		[3]	<p>○ 면접은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table border="1" data-bbox="564 237 1426 470"> <thead> <tr> <th data-bbox="564 237 799 344" rowspan="2">구문</th> <th colspan="3" data-bbox="799 237 1426 282">용역비</th> </tr> <tr> <th data-bbox="799 282 1007 344">20억원 미만</th> <th data-bbox="1007 282 1214 344">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h> <th data-bbox="1214 282 1426 344">30억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64 344 799 405">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td> <td data-bbox="799 344 1007 405">2점</td> <td data-bbox="1007 344 1214 405">3점</td> <td data-bbox="1214 344 1426 405">4점</td> </tr> <tr> <td data-bbox="564 405 799 470">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td> <td data-bbox="799 405 1007 470">1점</td> <td data-bbox="1007 405 1214 470">1.5점</td> <td data-bbox="1214 405 1426 470">2점</td> </tr> </tbody> </table> <p data-bbox="564 481 1447 633"> ※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 0점 처리.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p>	구문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1점	1.5점	2점
구문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1점	1.5점	2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p data-bbox="564 680 1447 786">○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p> <p data-bbox="564 837 1447 1025">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p> <p data-bbox="564 1077 1447 1227">2)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times 1.0 + \text{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times 0.7$ 또는 $1.0 + \text{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times 0.7$ 또는 1.0</p> <p data-bbox="564 1279 1447 1346">※ 해당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므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100%인정.</p> <p data-bbox="564 1397 1447 1585">※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p> <p data-bbox="564 1637 1447 1787">※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p>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단위 : 억 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10	9	8	7	6																								
다.	(1) 입찰참가제한 · 영업(업무) 정지	1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설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p><신용평가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회사채</th> <th>A-이상</th> <th>A-미만 BBB-이상</th> <th>BBB-미만 B-이상</th> <th>CCC+이하</th> <th>미제출</th> </tr> </thead> <tbody>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body>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 border="1" data-bbox="582 1391 1409 1590">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1.0점/건당</td> </tr> <tr> <td rowspan="2">활용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582 1688 1409 1908">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p>※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2) 투자실적	[7]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미만</td> </tr> <tr> <td>점수</td> <td>7</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5 [3]	<p>○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p>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율 (%)</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5</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자	[2]	<p>○ 상주기술자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p>○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기술자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자 : 0.1점 × 가중치 <p><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중치</th> <th>1.0</th> <th>0.8</th> <th>0.5</th> </tr> </thead> <tbody> <tr> <td>절감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 이상</td> <td>1.0% 미만 0.5% 이상</td> <td>0.5% 미만 0.1%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p>○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p> <p>○ 감점적용 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p><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서식)
2. 요약서 : [양식 1]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양식 2]
※ 첨부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공동수급협정서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감리전문회사)등록증, 감리업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 첨부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참여업체도 제출
5. 자기평가서 : [양식 3]
6. 용역참여자 동의서 : [양식 4]
※ 첨부 : 과업수행조직표 및 건설사업관리자 배치표
7.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현황 : [양식 5]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양식 6]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 [양식 7]
10. 부실벌점 : [양식 8]
11.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양식 9]
12.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양식 10]
13. 참여기술자가 수행중인 사업현황 : [양식 11]
14. 교체빈도 : [양식 12]
15. 가점 및 감점 내용 : [양식 13]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양식 14]
17. 자기소개서 : [양식 15]
18. 건설사업관리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 : [양식16]

□ 유의사항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용지규격 : A4(210mm×296mm)
3. 재 질 : 백상지(80g/m²)
4.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5. 제 본 : 단면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

접수번호	
------	--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포항국토○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 : _____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M.P :)

[양식 1]

확 약 서

당사는 귀 사무소에서 발주하는 포항국토○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불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소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비 고 (참여비율)
공동이행					
소계					
분담이행	업체명 (업종)	주소	대표자	전화	비고
소계					
합계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공동계약 운용요령_회계예규 참조)

[양식 3]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건설사업관리용역사

- 책임 : ○○○, 분야별 : ○○○

- 기술지원 :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계	60		
	책임(토목)	소계	23	
		경력	13	
		직무	9	
		교육훈련	1	
	분야별 (토목)	소계	24	
		경력	14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	소계	3	
		면접	3	* 발주청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3. 신용도	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자	계			
	책임(토목)	소계		
		경력		
		직무		
		교육훈련		
	분야별 (토목)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소계		
		등급		
		경력		
		교육훈련		
	면접	소계		
		면접		* 발주청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건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4]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소에서 발주하는 포항국토○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자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속회사	자필서명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 임 (토목)	○○○	○○○	~			
분야별 (토목)	○○○	○○○	~			
기술지원 (도로 및 공항)	○○○	○○○	~			
기술지원 (토질 및 기초)	○○○	○○○	~			
기술지원 (토목구 조)	○○○	○○○	~			

첨부 : 과업수행조직표 및 업무분담 계획표

※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양식 5]

참여 기술자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 등록 번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 임	○○○								
분야별	○○○								
기술 지원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책임기술자 경력 현황

구분	등급	성명	책임기술자 경력			비고
			건설사업관리 경력 (근무기간)	건설공사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자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사에서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현황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기술지원 (도로 및 공항)				
기술지원 (토질 및 기초)				
기술지원 (토목구조)				

※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사본 첨부

[양식 6]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A)	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참여기간 (B)	기간 비율 (B/A)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율	적용 요율	적용 금액	비고	
유사 용역 실적	완 료 실 적		~ (개월)	~ (개월)							
		소 계									
	진 행 실 적										
		소 계									
	계										
합 계											

- ※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 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1. 업 체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제 재 사 유	비 고
	~				
	~				
	~				
	~				

2. 참여기술자

기술자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부실벌점 및 제재현황 첨부

[양식 8]

부실벌점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분 야	성명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책 임 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자				

-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2.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9]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 10]

기술개발 · 활용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 활용 실적

구 분		업체명	명 칭	점 수
개발 실적	건설신기술			$1 \times 1/n(n=\text{기술개발자수})$
		소 계		
		소 계		
활용 실적	건설신기술			$0.5 \times \text{사용실적 가중치}$
		소 계		
		소 계		
	특허			$0.3 \times \text{사용실적 가중치} \times \text{경과기간 가중치}$
		소 계		
		소 계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년)			2년차(년)			3년차(년)			계	비 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text{㉠}+\text{㉡}+\text{㉢})/3$ $\times \text{참여지분율}$	
나										$(\text{㉠}+\text{㉡}+\text{㉢})/3$ $\times \text{참여지분율}$	
계										가+나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참여기술가가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년 월 일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년 월 일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직책	
책임	토목							
분야 별	토목							
기술 지원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교 체 빈 도

1. 용역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 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자의 교체빈도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 임 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자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 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3]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구 분	가중치별	기술자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첨부 1)

2. 부패행위관련자

참여기술자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자와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첨부 1>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 관리용역 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20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II.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자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 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III.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p>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발 주 기 관 장 직인</p>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이하 “포항국토”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항국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항국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항국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포항국토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포항국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15]

접수번호	
------	--

자 기 소 개 서

[포항국토○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14. 8.

[양식 16]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소			
최종학력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 1)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2) 자기소개서 작성시 소속회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상호는 모두 "000"으로 작성
(참여업체 식별 표시가 없도록 주의)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자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양식15]를 포함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1부)외 사본(5부)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원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단면좌철)은 별도제작)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관리기술자로서 지원한 동기
 - 마. 해당 공사에 대한 분야별건설관리기술자로서의 목표와 포부

※ 원본, 부분 표식을 표지 오른쪽상단에 기록

건설사업관리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

[포항국토○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지원자 :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자 지원자 : ○ ○ ○

2014. 8.

용역사

※ 원본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자 성명 등은 작성하되 부분에는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분에 상기 내용 포함시 서류면접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당해 용역수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사항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현장 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1.4 책임건설사업기술자로서 건설부조리 제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책임건설사업기술자)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업무파악 현황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 사업현황 및 기타내용 포함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서 열람가능

2.2 기술지원기술자의 투입시기 및 활용 방안

2.3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2.4 책임건설사업기술자로서 공사에 대한 중점관리 목표

□ 책임건설관리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배점	지 표
수	1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국토부의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적용